

국외여행자 수칙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한다.
3. 여행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귀국 보고서 등 관련 서류 및 자료를 기일(30일) 내 제출한다.
4. 여행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여행을 삼가며, 여행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여행 중의 휴대품은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6. 「공직자윤리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 (시가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2014. 11. .

여행자 소 속: 총 무 과
직 급: 행정 7급
성 명: 박 태 진(서명)